목 차

1. ITU-T/ITU-R/ISO/IEC 공동 특허 정책

2. ITU-T/ITU-R/ISO/IEC 공동 특허 정책 구현을 위한 가이드라인

4. ITU-T 소프트웨어 저작권 가이드라인

5. ITU-T 권고에 상표권 포함에 대한 ITU-T 가이드라인

<개정사항>

1. 「ITU-T/ITU-R/ISO/IEC 공동 특허 정책」 중 "7. 특허권 양도 또는 이전 정보 통지"(7. Notification of Assignment or Transfer of Patent Rights)" 신설
2. 일부 오타 및 오류 정정

➧ 원문 : http://www.itu.int/en/ITU-T/ipr/Pages/default.aspx

ITU-T/ITU-R/ISO/IEC을 위한 공동 특허 정책

다음은 ITU-T 및 ITU-R 권고와 ISO 및 IEC 문서(이 문서의 목적을 위하여, ITU-T/ITU-R 권고를 이하에서 "권고", ISO와 IEC 문서를 이하에서는 "문서"라고 한다)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특허에 관한 "실천요강"이다. 실천요강 내용은 간단하고 직설적이다. 권고 | 문서는 특허전문가가 아니라 기술전문가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그래서 특허와 같은 지적재산권의 복잡한 국제법적 상황과 친숙하지 않을 수 있다.

권고 | 문서는 비구속적이고, 그 목적은 전세계적으로 기술과 시스템의 적합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 즉 참여하는 모든 자들의 공통된 이익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권고 | 표준은 누구나 적용 및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므로 권고 | 문서에 전부 또는 일부 포함된 특허는 부당한 제한 없이 누구에게나 제공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실천요강의 유일한 목적이다. 특허로부터 발생하는 자세한 약정(라이센싱, 로열티 등)은 관련 당사자 간의 몫이다. 이러한 약정은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실천요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ITU-TSB, ITU-R BR, ISO/IEC의 CEO는 특허 기타 IPR의 증거, 타당성 또는 범위에 대한 유권적 내지 포괄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는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ITU, ISO, IEC의 작업에 참여하는 당사자는 초기부터 ITU-TSB 국장, ITU-BR 국장, ISO/IEC CEO에게 자기 소유 또는 다른 기관 소유의 알려진 특허 내지 출원중인 특허를 알려야 한다. 그러나 ITU, ISO, IEC는 이러한 정보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없다.

2. 권고 | 문서가 개발되고 1항의 정보가 공개되면 다음의 세가지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2.1 특허권자는 합리적인 조건으로 비차별적으로 다른 당사자에게 무료로 라이센스 교섭을 할 것이다. 이러한 교섭은 관련 당사자의 몫이며, ITU-T/ITU-R/ISO/IEC 외부에서 이루어진다.

2.2 특허권자는 합리적인 조건으로 비차별적으로 다른 당사자에게 라이센스를 교섭할 것이다. 이러한 교섭은 관련 당사자의 몫이며, ITU-T/ITU-R/ISO/IEC 외부에서 이루어진다.

2.3 특허권자는 2.1 내지 2.2의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이 경우 권고 | 문서는 특허를 가진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3. 2.1, 2.2 또는 2.3 어느 경우이든 특허권자는 ITU-TSB, ITU-BR 또는 ITO/IEC CEO에게 적절한 "특허 설명서 및 라이선스 선언서" 양식을 이용하여 서면 설명서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이 설명서는 양식의 해당 박스에서 요구하는 정도 이상의 추가적인 제공, 조건 또는 기타 예외 규정을 담을 필요는 없다.

ITU-T/ITU-R/ISO/IEC 공동 특허정책 구현을 위한 가이드라인

(2007년 3월 1일)

목 차

Part I – 공동 가이드라인

1 목적

2 용어 정의

3 특허 공개

4 특허 설명서 및 라이선스 선언서 양식

4.1 선언서 양식 목적

4.2 연락처 정보

5 회의 실시

6 특허 정보 데이타베이스

Part II – 조직별 조항

ITU에 적용되는 조항

ITU-1 포괄적 특허 설명서 및 라이선스 선언서 양식

ITU-2 통지

ISO/IEC에 적용되는 조항

ISO/IEC-1 문서 초안에 대한 컨설팅

ISO/IEC-2 통지

부기 1 ITU-T/ITU-R/ISO/IEC 공동 특허 정책

부기 2 ITU-T/ITU-R 권고 | ISO/IEC 문서의 특허 설명서 및 라이선스 선언서 양식

부기 3 ITU-T/ITU-R 권고의 포괄적 특허 설명서 및 라이선스 선언서 양식

Part I – 공동 가이드라인

1. 목적

ITU-T (ITU 전기통신 표준화부문), ITU-R (ITU 전파방송부문), ISO 및 IEC는 수년 동안 특허정책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목적은 특허권 쟁점이 발생하는 기술조직의 참여자에게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간단한 단어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기술적 전문가는 본래 복잡한 특허법 쟁점에 친숙하지 않음을 고려하여, ITU-T/ITU-R/ISO/IEC를 위한 공동 특허정책 (이하 '특허정책'이라 한다)은 운영적 부분에서 일종의 체크리스트로서 작성되었으며, 권고 | 문서가 전부 또는 일부 실행 또는 구현될 때 특허 라이선스를 요구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세 가지 다른 케이스를 포함하고 있다.

ITU-T/ITU-R/ISO/IEC를 위한 공동 특허정책 구현을 위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은 특허 정책 구현을 분명히 하고 촉진하기 위한 것이며, 특허 정책은 부기 1과 같으며 각 기구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허 정책은 개발 중인 권고 | 문서에 관련되는 특허의 조기 공개 및 확인을 권고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표준개발의 효율성이 가능하게 되고 잠재적 특허권 문제가 회피될 수 있다.

기구는 권고 | 문서에 대하여 특허 관련성 또는 필수성을 평가하는 데에는 관여하거나, 라이선스에 개입 또는 특허에 대한 분쟁 해결을 참여하여서는 안된다. 이것은 관련 당사자 - 과거와 마찬가지로 - 에게 남겨져야 한다.

기구별 조항은 이 문서 Part II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구별 조항은 특허 정책 또는 가이드라인과 충돌되어서는 안된다.

2. 용어 정의

기고서 : 기술조직에서 고려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문서

무료 : "무료"라는 단어는 특허권자가 필수 특허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무료"는 금전적 보상을 의미하며, 즉 특허권자가 라인센싱 약정의 일부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보상이 로얄티, 일시불 라이선시 요금 등으로 불리든지 불문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하에서 특허권자가 금전적 비용을 요구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반면에, 특허권자는 여전히 위의 문서의 구현자가 적용 법률, 사용범위, 호혜주의, 보장 등에 대한 기타 합리적인 조건을 포함하는 라이선스 약정에 사인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기구 : ITU, ISO 및 IEC

특허 : 특허는 필수 특허 또는 유사한 권리, 실용신안 및 기타 발명에 기한 실정법상 권리를 말하며, 장래 이들의 출원을 포함한다.

특허권자 : 특허를 보유, 통제 그리고/또는 라이선스 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권고 | 문서 : ITU-T/ITU-R 권고는 "권고"라고 하며, ISO 문서 및 IEC 문서는 "문서"라고 한다. 다양한 권고(안) | 문서(안) 유형은 부기 2의 특허 설명서 및 라이선스 선언서 양식(이하 "선언서 양식"이라 한다)에서 "문서 유형"이라 한다.

기술조직 : ITU-T/ITU-R의 연구반, 하부 그룹 기타 그룹 및 ISO/IEC의 기술위원회, 서브위원회 및 작업반을 말한다.

3. 특허공개

1항의 특허정책에서 강요되는 바와 같이, 기구의 작업에 참여하는 당사자는 초기부터 자사가 소유 또는 다른 조직이 소유하는 알려진 특허 내지 알려진 출원중인 특허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문맥에서, "조기부터"라는 용어는 이러한 정보가 권고 | 문서 개발 중 가능한 조기에 공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현재는 문서내용이 여전히 너무 모호하고 추후의 중대한 수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초안 문서가 공개되었을 때에는 이러한 공개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리고 관련 정보는 선의로 그리고 최선의 노력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특허 검색 요구는 없다.

위에 언급한 것 이외에, 기술조직에 참여하지 않는 당사자는 자사 그리고/또는 제3자의 알려진 특허를 기구에 알릴 수 있다.

자사 소유 특허를 공개함에 있어서, 특허권자는 본 가이드라인 4항에 서술하는 특허설명서 및 라이선스 선언서 양식(이하 '선언서 양식'이라 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3자 특허의 관심을 불러오는 통신문은 서면으로 관련 기구에 제출되어야 한다. 잠재적 특허권자는 관련 조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선언서 양식을 제출한다.

특허정책 및 본 가이드라인은 권고 | 문서의 승인에 따라 기구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공개된 특허에 적용한다.

특허의 확인이 권고 | 문서 승인 전 또는 후에 발생하였든지, 특허권자가 특허정책의 2.1항 또는 2.2항의 라이선스를 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기구는 즉시 영향받는 권고 | 문서에 대하여 책임있는 기술조직에 권고하여, 적절한 행위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행위는 잠재적 충돌을 제거하고 나아가 충돌을 야기하는 기술적 고려사항을 심사하여 분명히 하기 위하여 권고 | 문서 또는 그 안을 심의하는 것도 포함하며 반드시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4. 특허 설명서 및 라이선스 선언서 양식

4.1 선언서 양식 목적

각 기구의 특허 정보 데이타베이스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허권자는 특허선언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특허선언서 양식은 각 기구의 웹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다(선언서 양식은 정보제공을 위하여 부기 2에 있다). 선언서 양식은 주의환기를 위하여 각 기구에 송부되어야 하며, ITU은 TSB 국장 또는 BR 국장, ISO/IEC는 CEO에게 제출한다. 선언서의 목적은 특허권자가 작성한 선언서를 각각의 기구에 제출하는 표준을 위한 것이며, 이러한 제출이 ITU의 경우에는 요구사항이고, ISO와 IEC의 경우에는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선언서 양식은 특허권자가 선언서 양식의 옵션 1 또는 2에 따라 라이선스 하지 않으려는 경우(즉, 선언서 양식 옵션 3을 선언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와 설명을 제공한다.

선언서 양식은 특허권자에게 특정 권고 | 문서의 구현에 요구되는 특허에 대한 권리의 라이선스 선언서의 의미를 준다. 특히, 선언서 양식을 제출함으로써, 제출한 당사자는 특정 권고 | 문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행 또는 구현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자사 소유 특허에 대하여 특허정책에 따른 라이선스 여부를 선언한다.

선언서 양식에 포함된 설명서는 분명한 에러가 있어서 교체되지 않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

특허권자가 복수의 특허를 확인하고 선언서 양식의 서로 다른 옵션으로 분류되는 경우 그리고/또는 특허권자가 복합 특허의 여러 청구항을 선언서의 서로 다른 옵션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선언서 양식이 적절하다.

4.2 연락처 정보

선언서 양식을 작성함에 있어서, 오랫동안 유효한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가능한 경우, “성명과 부서” 및 이메일은 일반적인 것이어야 한

다. 또한 가능한 경우, 특히 다국적 조직인 경우 당사자는 제출된 모든 양식에 동일한 공통 연락처를 나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기구의 특허 정보 데이타베이스에서 최신 정보를 유지하기 위하여, 각 기구는 특히 연락처 정보와 관련하여 과거에 제출된 선언서 양식의 변경 또는 정정을 각 기구에 통지하도록 요구한다.

5. 회의 실시

특허의 조기 공개는 권고 | 문서가 개발되는 절차의 효율성에 기여한다. 그러므로 제안된 권고 | 문서의 개발 과정 중에서 각 기술조직은 제안된 권고 | 문서에 필수적으로 알려진 특허의 공개를 요구한다.

기술조직 의장은 적절한 경우 각 회의시 적절한 시점에 검토중인 권고 | 문서의 실시 또는 구현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특허를 알고 있는지 여부를 문의한다. 이러한 질문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긍정적인 답변과 함께 회의 보고서에 기록되어야 한다.

관련 기구가 특허권자로부터 특허정책 2.3항을 선택한다는 확인이 없는 한, 권고 | 문서는 관련 기구의 적절하고 개별적인 규정에 따라 승인될 수 있다. 기술조직에서의 논의는 권고 | 문서의 특허 기술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를 포함한다. 그러나 기술조직은 주장하는 특허사항의 필수성·범위·유효성 또는 특정 라이선스 조건에 대한 입장을 취할 수는 없다.

6. 특허정보 데이타베이스

표준제정절차 및 권고 | 문서의 적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 기구는 선언서 양식을 통하여 각 기구에 전달된 정보로 구성된 특허정보 데이타베이스를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특허정보 데이타베이스는 특정 특허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또는 이러한 정보가 아니라 특정 권고 | 문서에 대한 특허 정책의 준수에 대한

설명을 포함할 수 있다.

특허정보 데이타베이스는 정확성 또는 완전성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 기구에 제출된 정보를 나타낸 것이다. 마찬가지로 특허 정보 데이타베이스는 특정 권고|문서의 사용 또는 구현을 위하여 특허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각 기구에 선언서 양식을 제출한 법인과 연락하기 원한다는 것을 사용자에게 경계시키기 위한 안내문으로 간주될 수 있다.

7. 특허권 양도·이전 사항 통지 (2009.5.1 신설)

특허정책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각 기구의 작업에 참여하는 당사자는 초기부터(from the outset) 알려진 특허 또는 알려진 출원중인 특허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특허권자가 ITU/ISO/IEC에 라이선스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였다고 여겨지는 특허의 소유권 또는 통제권을 양도 또는 이전한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자는 관련한 라이선스 실시에 관한 사항이 존재함을 양수인 또는 피이전인에게 통지하도록 합리적으로 노력할 의무가 있다.

Part II – 기구별 조항

ITU에 적용되는 조항

ITU-1 포괄적 특허 설명서 및 라이선스 선언서 양식

누구나 ITU-T 및 ITU-R 웹사이트에 있는 포괄 특허 설명서 및 라이선스 선언서 양식(부기 3 참조)을 제출할 수 있다. 이 양식의 목적은 특허권자에게 그들 기고서에 포함된 특허 내용과 관련하여 일반적 라이선스를 선언하는 자발적 선택을 특허권자에게 제공하기 위함이다. 특히, 이 양식을 제공함으로써, 제출한 당사자는 각 기구에 제출된 기고서에 포함된 제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권고에 포함되고 포함된 부분이 특허화 되었거나 관련 특허출원이 등록되어 권고의 실시 또는 구현을 위하여 그 라이선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우에 자사가 보유한 모든 특허에 라이선스 할 것임

을 선언한다.

일반적 특허 설명 및 라이선스 선언서 양식은 각각의 권고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 선언서 양식(Part I 4항 참조)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정책에 따라 특허권자의 책임 및 조기 공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포괄 특허 설명 및 라이선스 선언서는 이것이 대체되지 않는 한 효력을 갖는다. 이는 특정 기고서에 대하여 동일 특허권자가 제출한 (권고마다의) "개별적" 선언서 양식으로 번복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ITU 특허 정보 데이터베이스는 포괄적 특허 설명 및 라이선스 선언 기록을 포함한다.

ITU-2 통지

필요시, 사용자가 ITU 특허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문구를 모든 신규 및 개정된 ITU-T 및 ITU-R 권고의 표지에 나타내어야 한다. 그 문구는 다음과 같다 :

> "ITU는 이 권고의 실행 또는 실시에 주장된 IPR의 이용을 포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립니다. ITU는 주장된 IPR의 증거, 타당성 또는 적용가능성에 대하여 아무런 입장을 취합니다. 주장된 IPR을 ITU 회원 또는 권고 개발 절차 외부의 자가 주장하든 불문합니다.
>
> 이 권고를 승인한 날로부터, ITU는 이 권고를 구현하는 데에 필요한 특허에 의하여 보호받는 IPR 통지를 [받았다/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구현자들은 이것이 최신의 정보가 아닐 수 있음에 주의하여, ITU 특허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할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ISO/ IEC에 적용되는 조항

ISO/ IEC-1 문서 초안에 대한 컨설팅

의견수렴을 위해 제출된 모든 초안의 표지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포함하여야 한다:

> "이 초안 수령자는 의견과 함께 알고 있는 관련 특허권의 통지를 제출하고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공하여 주십시오."

ISO/IEC－2 통지

준비기간 중 특허권이 확인되지 않은 출판된 문서의 서문(Forward)에는 다음과 같은 통지문을 포함하여야 한다.

> "이 문서의 일부는 특허권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ISO [그리고/또는] IEC는 관련 일부 또는 모든 특허권을 확인할 책임이 없습니다."

준비기간 중 특허권이 확인된 출판된 문서의 서문(Introduction)에는 다음과 같은 통지문을 포함하여야 한다.

> "ISO [그리고/또는] IEC는 이 문서의 준수시 (....서브항...)의 (...서브 주제...)에 대하여 특허의 사용이 관련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는 사실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 ISO [그리고/또는] IEC는 이 특허권의 증거, 유효성 및 범위에 대하여 아무런 입장을 취하지 않습니다.
> 이 특허의 소유자는 ISO [그리고/또는] IEC에 전세계 라이선스 신청자와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 협상할 것임을 선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 특허권의 소유자 설명서가 ISO [그리고/또는] IEC에 등록되어 있

습니다. 이 정보는 다음으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

특허권 소유자 성명 .....

주소 .....

이 문서의 일부에는 위의 알려진 것 이외의 특허권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ISO [그리고/또는] IEC는 어떤 또는 모든 특허권을 확인할 책임은 없습니다."

ITU

부기 **1**

ITU-T/ITU-R/ISO/IEC 공동 특허정책 참조

부기 2

ITU-T/ ITU-R 권고 | ISO/ IEC 문서의 특허 설명 및 라이선스 선언





ITU-T/ ITU-R 권고 | ISO/ IEC 문서의 특허 설명 및 라이선스 선언

이 선언은 실제적인 라이선스 허여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아래 세 곳의 기구로 **각각**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전기통신연합
정보통신 표준화국
국장
스위스
20 제네바 CH-1211
Place des Nations
팩스: +41 22 730 5853
이메일 : tsbdin@itu.int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통신국
국장
스위스
20 제네바 CH-1211
Place des Nations
팩스: +41 22 730 5853
이메일 : brmail@itu.int

국제표준화기구
사무총장
스위스
20 제네바 CH-1211
rue de Varembe 1번지
팩스: +41 22 733 3430
이메일 :
patent.statement@iso.org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사무총장
스위스
20 제네바 CH-1211
rue de Varembe 3번지
Fax :+41 22 919 0300
이메일 : inmail@iec.ch

특허권자
법인명 _____

라이선스 신청자 연락정보:
성명 및 부서 _____
주소 _____
_____
전화 _____
팩스 _____
이메일 _____
웹주소(선택)

문서유형 :

☐ **ITU-R 권고(*)** ☐ **ITU-T 권고(*)** ☐ **ISO 문서(*)** ☐ **IEC 문서(*)**
(관련 조직에 양식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 **공통문서 내지 이중 문서 (ITU-T 권고 | ISO/ IEC 문서(*))** (공통 또는 이중 문서를 위하여, ITU-T, ISO, IEC 세 기구에 각각 양식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 **ISO/ IEC 문서(*)** (ISO/IEC 문서는 이 양식을 ISO/IEC 양기구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 번 호

(*) 제 목

라이선스 허여 신고

특허권자는 등록 그리고/또는 출원중인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특허의 사용이 문서를 구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믿고 있으며, ITU-T/ITU-R/ISO/IEC 공동특허정책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기에 선언합니다. (하나의 체크 박스만 선택)

☐ 1. 특허권자는 위 문서 구현 제품의 제조·사용·판매를 위하여, 범세계적으로 비차별적이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신청자 수를 제한하지 않고 무료로 라이선스 허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협상은 관련 당사자들의 몫으로, ITU-T, ITU-R, ISO, IEC 범위 밖에서 수행됩니다.
또한 위 문서를 위하여 특허권자의 라이선스 의지를 상호주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____ 표시합니다.
또한 특허권자가 위 문서의 구현에 요구되는 특허 청구항을 합리적인 조건(그러나 무료가 아닌)으로 허여하려고 하는 신청인에게는 합리적인 조건(그러나 무료가 아닌)으로 허여할 것을 유보하려는 경우에는 여기에 ____표시합니다.

☐ 2. 특허권자는 위 문서 구현 제품의 제조·사용·판매를 위하여, 범세계적으로 비차별적이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신청자 수를 제한하지 않고 라이선스 허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협상은 관련 당사자들의 몫으로, ITU-T, ITU-R, ISO, IEC 범위 밖에서 수행됩니다.
또한 위 문서를 위하여 특허권자의 라이선스 의지를 상호주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____ 표시합니다.

☐ 3. 특허권자는 위 1항 또는 2항 중의 하나의 조항에 의한 라이선스를 허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정보가 ITU에 제공되어야 하며, ISO와 IEC는 본 선언의 일부로 강력히 권고됩니다.
- 특허 등록번호 또는 출원 번호(출원중인 경우)
- 위 문서가 영향을 받는 부분 표시
- 위 문서와 관련된 특허 주장 사항에 대한 설명

무료(Free) : "무료(free)"라 함은 특허권자가 필수 특허와 관련하여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료"라 함은 금전적 보상 문제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즉, 특허권자는 라이선스 허여 약정의 일부로서 어떠한 금전적 보상을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보상이 로열티, 일회성 라이선스 사용료 등 명칭에 상관없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특허권자가 어떠한 금액을 부과하지 않는 약속을 하는 반면에, 특허권자는 여전히 실정법, 사용 분야, 상호주의, 보증 등과 관련하여 기타 합리적인 조건을 포함하는 라이선스 약정을 위 문서 구현자에게 요구하고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호주의(Reciprocity) : 본문에 사용된 바와 같은 "상호주의(reciprocity)"라 함은 특허권자는 장래의 라이선스 실시자가 위와 동일한 문서의 구현을 위한 필수 특허 또는 특허청구항에 대하여 무료 또는 합리적인 조건으로 실시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에만 해당 장래 라이선스 실시자에게 라이선스 할 것임을 의미한다.

서명

특허권자 _____
대리인 성명 _____
대리인 직위 _____
서명 _____
소재지, 날짜 _____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

특허정보 (옵션 1 및 옵션 2를 권고하나 강요는 아님. 옵션 3은 ITU에만 해당)(주)				
번호	상태 [등록/출원]	출원국	등록번호 또는 출원번호 (출원중인 경우)	명칭

주 : 옵션 3인 경우, 제공되어야 하는 추가적인 최소 정보를 옵션 3 박스에 열거한다.

ITU

부기 3

ITU-T/ ITU-R 권고의 포괄 특허 설명 및 라이선스 선언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T/ ITU-R 권고의
포괄 특허 설명 및 라이선스 선언

이 선언서는 실제적인 라이선스 허여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관련 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전기통신연합
정보통신 표준화국
국장
스위스
20 제네바 CH-1211
Place des Nations
팩스: +41 22 730 5853
이메일 : tsbdin@itu.int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통신국
국장
스위스
20 제네바 CH-1211
Place des Nations
팩스: +41 22 730 5853
이메일 : brmail@itu.int

특허권자

법인명 _____

라이선스 신청자 연락정보:

성명 및 부서 _____

주소 _____

_____

전화 _____

팩스 _____

이메일 _____

웹주소(선택)

라이선스 허여 신고

특허권자는 취득된 특허 그리고/또는 계류 중인 출원 특허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위 ITU-T 권고 사항 | ISO/IEC 국제 표준을 구현함에 있어 이러한 권고 사항이 필요로 할 수 있으며, 이에, ITU-T 특허권 정책(ITU-T 웹사이트 참조) 및 ISO/IEC 특허권 정책(ISO/IEC 지침)에 관한 설명서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하나의 체크 박스만 선택).

☐ 1. 특허권자는 위의 ITU-T 권고Ⅰ ISO/IEC 국제표준의 구현수단을 만들고, 사용하고, 판매하기 위한 합당한 조건 하에서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전세계적으로 무제한의 특허 출원인에게 무료 라이선스를 수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

협상은 관련 당사자들의 몫으로서 ITU-T | ISO/IEC 범위 밖에서 수행된다.

또한 위의 ITU-T 권고 | ISO/IEC 국제표준에 대해 특허권자의 라이선스 부여 의지가 상호주의에 따르는 경우 여기에 ____ 표시한다.

또한 특허권자가 특허 청구권에 라이선스를 부여할 의지가 있는 특허 출원인에게만 타당한 조건(무료가 아님)에 근거해서 라이선스를 부여할 권리를 보유할 경우 여기에 ____ 표시를 한다. 특허 청구권의 이용은 타당한 조건(무료가 아님)에 근거해서 위의 ITU-T 권고 | ISO/IEC 국제표준을 구현하는데 요구된다.

☐ 2. 특허권자는, 위의 ITU-T 권고 사항 | ISO/IEC 국제 표준의 구현 사항을 생성, 사용 및 판매할 수 있는 무료의 라이선스를, 전 세계에 걸쳐, 비-차별적인 기준으로, 그리고 기타 합리적인 거래 조건에 의거하여, 요청하는 누구에게나 수에 상관없이 허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허권자의 라이선스 허여 의사 표시가, 위 ITU-T 권고 사항 | ISO/IEC 국제 표준의 상호주의에 따른 조건부일 경우, 여기에 ____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무료(Free): 용어 "무료(free)"라 함은 특허권자가 필수 특허와 관련하여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료"라 함은, 금전적 보상 문제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즉, 특허권자는 라이선스 허여 약정의 일부로서 어떠한 금전적 보상을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그러한 보상이 로열티, 일회성 라이선스 허여 사용료, 등 호칭에 상관없이).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특허권자는 어떠한 금전적인 액수를 부과하지 않는 약정을 진행하는 반면, 특허권자는 여전히 실정법, 사용 분야, 상호성, 보증, 등과 관련한 부면에서 기타 합리적인 거래 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라이선스 약정에 서명한 ITU-T 권고 사항 | ISO/IEC 국제 표준의 구현자로서 자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호성(Reciprocity): 본문에 사용된 바와 같이, 용어 "상호주의(reciprocity)"라 함은 잠재 라이선스 도입자가 동일한 ITU-T 권고 사항 | ISO/IEC 국제 표준의 구현에 필요한 자신의 필수 특허(들) 또는 필수 특허 주장 사항(들)을 무료로 또는 합리적인 거래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허여할 경우, 특허권자는 그러한 잠재 라이선스 도입자에게 오로지 라이선스를 허여하는 측면만 요구됨을 의미합니다.

서명

기구 _____

피허가자 성명 _____

피허가자 직위 _____

서명 _____

소재지, 날짜 _____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

ITU-T 소프트웨어 저작권 가이드라인

2005년 3월, 발행 2.1.1

목 차

1. 개요

1.1 목적

1.2 배경 - 지적재산권

1.3 정의

1.4 약어

2. 권고에 소프트웨어를 포함시킬 것을 고려하는 경우에 생기는 다양한 쟁점

2.1 일반적 고려사항

2.2 권고에 포함함에 있어서 IPR 쟁점을 유발해서는 안 되는 소프트웨어

2.3 IPR 이슈를 유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2.4 ITU-T 권고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소프트웨어

3. 예외적 상황에 대한 절차

3.1 개요

3.2 예외적 상황 절차 개요

3.3 소프트웨어 저작권 설명 및 라이선스 선언서

3.4 연구반 책임

3.5 승인 전 당사자의 행위와 의무

3.6 권고 출판 중 및 출판 후 행위와 의무

부기 A 소프트웨어 저작권 설명 및 라이선스 선언서

부기 B "ITU-T 권고 평가"를 위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약정

부기 C 저작권 통지/라이선스 약정

부기 D 소프트웨어 저작권자 및 ITU간 옵션 1.2 라이선스 조건

1. 개요

1.1 목적

본 문서의 취지는 ITU-T 권고에 소프트웨어를 포함시키는 문제를 고려함에 있어서 ITU-T 연구반에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소프트웨어의 포함을 고려할 때 다루어야 할 문제에 관한 일반정보와 권고안 구현자가 권고안을 준수하는 제품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작권 라이선스가 필요하게 될 (즉 권고의 준수로 권고가 요구하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필연적으로 침해하게 되는)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할 경우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한 가이드를 포함하고 있다.

1.2 배경 – 지적재산권

연구반은 연구반이 ITU-T 권고의 원문에 특정 법인의 지적재산권을 포함시키는 것이 기술적으로 신중함을 판단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발생하는 문제들은 지적재산권 특성에 달려 있으며, 동일하지 않다. 포함된 지적재산권이 승인 또는 출원중인 특허로 보호될 경우, 연구반은 "ITU-T 특허정책"과 관련 "ITU-T 특허정책 구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특허화 된 또는 저작권이 있는 지적재산은 그 보유자에게 전속적 권한을 부여한다 : 그러나, 이들 권리는 매우 다르다. 따라서 이 소프트웨어 저작권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은 연구반이 저적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하는 경우 연구반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한다.

일반적으로, 특허는 특허권자에게 특정 발명 및 이와 관련된 아이디어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제공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저작권은 저작권자에게 하나 이상의 아이디어의 특정 표현에 대하여 소유권적 이익을 제공한다.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내용은 문구와 도표에서 소프트웨어 코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형식을 갖는다. 현재 ITU-T 절차는 기고서 내용 중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내

용이 제한 없이 권고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고자가 그 내용의 사용에 특정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권고 A.1, 3.1.5항 참조). 이 가이드라인은 기고자가 소프트웨어 코드를 제출하고 자신의 독점적 저작권 이익을 주장할 때 처리해야 하는 관련 문제들을 판단하는 데 연구반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1.3 정의

회원: 본 가이드라인 내에서 "회원"이라는 용어는 ITU 회원국 뿐만 아니라 ITU-T의 부문회원과 준회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객체코드: 컴퓨터를 통해서 직접 운용될 수 있는 명령어. 객체코드는 사람이 판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컴퓨터나 시스템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본 문서의 목적상, 객체코드는 역동적으로 연결된 라이브러리, 객체코드 라이브러리 및 이원 실행 코드를 포함하지만 여기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소스코드: 객체코드를 생산하기 위하여 처리될 수 있는 컴파일러, 해석 프로그램 및 어셈블러의 입력 정보. 소스코드는 사람이 판독할 수 있는 것이며 원칙적으로는 컴퓨터나 시스템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객체코드로 전환될 수 있다.

1.4 약어

ASN.1 Abstract Syntax Notation One
GDMO Guidelines for the Definition of Managed Objects
MSC Message Sequence Chart
SDL Specification and Description Language
SDO Standards Development Organization
TTCN Tree and Tabular Combined Notation

2. 권고에 소프트웨어 포함을 고려할 때 발생하는 문제

2.1 일반 고려사항

저작권이 있는 내용에 관한 법적 문제는 특허권 있는 내용에 대한 것과 매우 다르다. 저작권법은 특허법이 특허권자에게 제공하는 것과 유사한 지적재산권을 저작권자에게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권고에 반영할 때 저작권이나 특허권 있는 내용을 서로 다르게 취급해야 하는 강제적 이유가 있다. 이들 두 권리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특허는 특허권 보유자가 혁신에 기여했다는 독립적 판단에 기초한 권리를 나타낸다. 반면, 저작권에 관해서는 이러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저작권은 아이디어의 한 가지 특정 표현만을 보호하나, 특허는 보다 추상적인 의미로는 특정 기술이나 발명이라 정의하고 특허권자에게 꽤 광범위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한다. 그 결과, 소프트웨어에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대안적인 구현이 저작권에 더욱 중요하다. 제한적인 범위의 저작권은 복제에 대한 보호이나,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구현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그리하여 경쟁자가 자신의 구현물을 개발함으로써 저작권을 추구할 수 있다. 반대로 원하는 특징이나 기능에 "필수" 특허권을 보유하는 것이 가능하며, 특허권자에게 부여되는 보다 독점적인 권리는 사실상 대안 구현을 불가능하게 한다. 권고가 모든 권고 구현자에게 특정 저작권 있는 작업의 복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표준으로 확정됨으로써 저작권은 초기에 저작권이 부여되었을 때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된다.

ITU-T 권고는 성능 기반 요구조건을 이용하거나 기술적 절차 내에 깔린 아이디어의 새로운 표현을 만들어내는 저작권 있는 내용이 여기 저기에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연구반은 권고에 저작권 있는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의 포함을 고려하기 전에 선호하는 옵션의 유형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최종 권고가 특정 제품 또는 단일 구현으로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보다 유연성 있게 한다.

2.2 권고에 포함할 때 IPR 문제를 유발해서는 안 되는 소프트웨어

ITU-T 권고에 포함된 대부분의 소프트웨어가 이 범주에 속한다.

이 범주에는 (권고 A.1, 3.1.5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아무런 제한 없이 연구반에 제출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여기에는 SDL, MSC, ASN.1, GDMO 및 TTCN 등과 같은 형식 기술 테크닉이 포함된다. 이들의 저작권은 문서와 같은 방식으로 다루어지며, 일정한 그룹 내에서의 논의와 출판되는 최종 ITU-T 권고의 일부 또는 전체에 사용하도록 이 문서의 정상적 배포를 허용하기 위하여 제한을 두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자료가 아무런 제약 없이 제출되면, 이러한 자료는 제출자의 저작권 주장으로부터 자유롭게 권고를 구현하는 자들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권고는 여전히 문서로서 권고에 있는 저작권에 대하여 ITU가 수립한 제약에 따른다. 물론, 가장 적절한 표현수단(자연언어, 형식기술, 소프트웨어 등)의 선택과 관련된 일반적인 기술적 고려사항이 적용된다.

이 범주에는 특정 법인의 전속적 저작권 주장에 따르지 않는 ITU-T 연구반이 공동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도 포함한다.

이 범주에 속하는 모든 소프트웨어의 경우, 본 가이드라인의 3항과 부기 A, B, C, D가 적용되지 않는다.

2.3 IPR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권고에는 일정한 제약을 더하여 연구반에 제출되는 소프트웨어가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가 명시적 또는 참조로써 권고에 포함될 경우, 그 구현에 필수적 또는 비필수적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가 필수적일 경우, 이러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권고를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필수 및 비필수적 소프트웨어에 관한 문제 중 대부분은 서로 같지만 라이선스 구현은 매우 다를 수 있다.

2.3.1 비권장

위 2.1과 같은 관점에서, ITU-T는 연구반이 ITU 이외의 자가 소유하고 권고 구현을

위하여 그 사용이 요구되는 저작권 있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권고는 경쟁 관계에 있고 상호운용 가능한 구현이 개발될 수 있고 특정한 전속적 솔루션을 위한 보장이 아닌 특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ITU-T는 ITU 이외 다른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저작권 보유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자의 허락 아래 정보 목적으로만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다. 뿐만 아니라, 공개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동일한 아이디어를 서로 다른 표현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저작권 보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도 인식되어야 한다.

객체코드는 결코 규범적인 요구사항으로서 권고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하지만 정보목적으로 이러한 코드를 예로 포함시키는 것은 유용할 수 있다.

또한 권고에 저작권 보호 소프트웨어를 포함시키면 해결되어야 할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

- 소프트웨어는 유지 보수되어야 하며, 이때 고장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해결책을 마련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은 일반적인 문제이지만 권고에 저작권 보호 소프트웨어가 사용될 경우에는 유지보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를 원하는 수준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이 문제는 누가 다루어야 하는가? 지적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적절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 가능한 라이선스 조건의 범위와 복잡성은 매우 폭넓다.
- 다른 많은 설명기법(예를 들면, 의사 코드)이 동일한 한계를 겪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는 자연언어(예를 들면 표, 다이어그램 및 방정식 등의 문구 설명)보다는 낮은 가독성을 지니고 있다.
- 영업비밀을 보호할 필요성으로 흔히 표준화 절차 마지막까지 저작권 보호 자료에 대한 절차와 제한적 접근이 복잡할 수 있다.

결국, 특정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요하는 권고는 예외적인 상황이며 연구반 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능할 때는 언제라도 권고는 성능 규격에 기초해야 하고,

ITU 외부자 소유의 특정·전속적 저작권 있는 소프트웨어/소스코드의 이용을 강제하는 것과 반대로 제안된 구현의 구속받지 않는 표현이어야 한다.

일례로, 알고리즘은 프로그래밍 언어로 비교적 적은 수의 줄로 표현될 경우, 권고에서 추상적인 표현이 가능해야 하며, 이것이 선호되는 접근방법이다. 이는 각 구현자가 어떻게 표준을 구현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2.3.2 예외적인 상황

연구반이 기술적인 이유로 위의 비권고에도 불구하고 권고에 저작권 제한을 지닌 필수 소프트웨어를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아래 섹션 3에 설명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 섹션 3은 음성코더와 객체 음성 품질 평가 알고리즘과 같은 정확성을 요하는 매우 복잡한 알고리즘을 위해 개발되었으며, 이 경우 알고리즘은 ANSI C와 같은 고급 컴퓨터 언어로 규범적으로 정의된다.

앞서 설명한 것 이외의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것으로는 기대되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하는 연구반이 있다면 진행하기 전에 TSB 국장과 먼저 상의해야 한다.

2.4 ITU-T 권고에 포함해서는 안 되는 소프트웨어

표준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대량으로 판매된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결코 ITU-T 권고의 필수적 부분으로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3. 예외상황에 대한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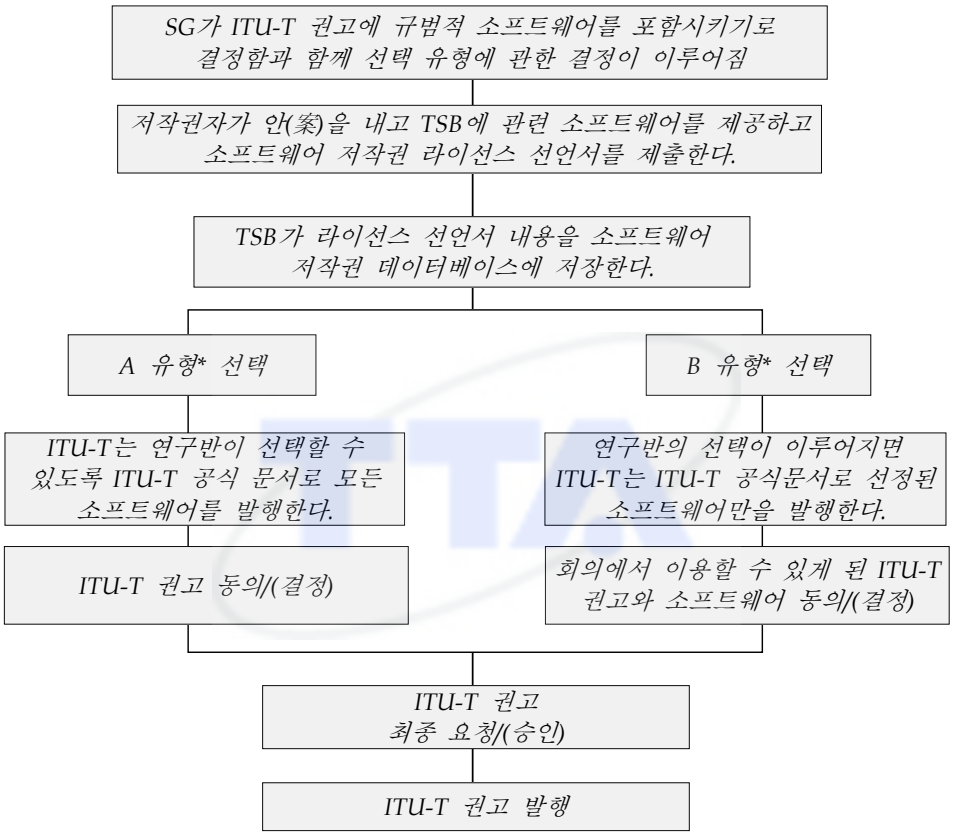
3.1 개요

연구반이 ITU-T 외부의 저작권 보유 규범적 소프트웨어를 권고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는 경우,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러한 유형의 권고는 권고 A.8 “신규 및 개정 권고안의 대안 승인 절차(AAP)”에 규정된 절차를 이용하여 승인된다.

3.2 예외상황 절차 개요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할 경우, 관련 권고 개발 절차는 아래 플로우차트에서 보는 바와 같다.



* 3.4.2항 참조

주의 : 이 플로우차트는 동의/결정 후 아무런 의견도 접수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다. 의견이 접수되었을 경우, 의견은 승인절차를 통해 다른 권고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일단 권고가 승인되어 발행되면, 후속 개정은 기타 유형의 ITU-T 권고에 대해 사용되는 절차를 따른다.

3.3 소프트웨어 저작권 설명 및 라이선스 선언서

권고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소프트웨어를 제출하는 회원은 권고안이 작성되어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시점에, 소프트웨어 저작권 설명 및 라이선스 선언서 양식(부기 A 참조)을 제출하도록 한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설명 및 라이선스 선언서 양식의 목적은 소프트웨어 저작권자가 선언서를 TSB에 표준화된 방식으로 제출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옵션 1.3, 1.4 및 2의 경우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는 권고 사용자와 협상하고자 하는 라이선스 일반조건(로열티나 수수료 조건은 제외)을 간략하게 정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회원은 자신의 저작권 보유 자료가 들어있는 각 권고에 대해 이러한 양식을 사용한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자가 복수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이들을 소프트웨어 저작권 설명 및 라이선스 선언서의 서로 다른 옵션으로 분류할 경우 복수 양식이 적절하다.

TSB가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설명 및 라이선스 선언서 양식의 옵션 1.x 또는 옵션2의 규정을 준수를 거절하는 선언서를 받을 경우, TSB 국장은 관련 연구반에 이 상황을 알린다. 이에 대해 연구반은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TSB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설명 및 라이선스 선언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유지한다.

3.4 연구반의 책임

3.4.1 소프트웨어 수록 결정

권고에 소프트웨어를 포함시킬 것인지 결정할 때 연구반이 고려할 검토사항은 본 가이드라인 2항에서 다루고 있다

3.4.2 선택과정

연구반은 또한 권고에 포함시킬 소프트웨어를 A 유형으로 선택할 것인지, B 유형으로 선택할 것인지에 관해서도 결정해야 한다.

선택과정의 기술적 부분은 연구반이 정의하고 동의해야 한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기술적인 제한이나 조건에 대한 검토와 함께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 패키지에 대한 평가가 포함된다. 특히 B 유형을 선택했을 경우, 선택 시험과정에 목적코드가 사용

될 것으로 예상된다.

3.4.2.1 A 유형 선택

A 유형 선택시, 소스코드를 포함한 모든 소프트웨어는 선택 테스트에 앞서 평가를 위하여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3.4.2.2 B 유형 선택

B 유형 선택시, TSB는 소스코드가 테스트가 완료되고 선택이 이루어져서 동의/(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회원들이 이용할 수 없도록 한다. 이 시점에서 (즉, 동의/(결정) 회의에서) 성공적인 후보의 소스코드는 평가 라이선스 약정(부기 A 참조)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그리고 권고 승인전에 회원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3.4.3 진행 중의 유지보수 고려

권고안 제정 과정에서 연구반은 권고안이 승인되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3.5 승인 전 당사자의 행위와 의무

3.5.1 소프트웨어 저작권자

권고안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제출하는 회원은 제안서 제출시 소프트웨어 저작권 설명 및 라이선스 선언서 양식(부록 A 참조)을 제출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설명 및 라이선스 선언서 양식에 있는 라이선스 신고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두 가지 모두를 선택할 경우, 선택에 앞서 소프트웨어 저작권 설명 및 라이선스 선언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TSB에 객체코드를 제공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 A 유형 선택의 경우, 선택에 앞서 TSB에게 소스코드를 제공해야 한다.
- B 유형 선택의 경우, 동의/(결정) 회의에 앞서 TSB에게 소스코드를 제공해야 한다.

소프트웨어를 제안하는 기고서에서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보증 등에 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3.5.2 ITU-T

권고 승인에 앞서 TSB는 평가라는 제한된 목적으로 회원이 무료로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A 유형을 선택할 경우, 소스코드를 포함한 모든 소프트웨어가 TSB에 제공되었을 때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B 유형을 선택할 경우, 승낙/(결정)이 이루어진 후 승낙/(결정) 회의에서 선택과정의 부산물인 소스코드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권고안 절차 A나 B를 통해 이루어지 승인의 경우, 연구반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후 승낙/(결정) 평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약 8주간 최종요청기간의 시작점을 지연시키도록 요청한다.

소프트웨어는 권고의 평가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저작권 라이선스와 함께 이용이 가능하다. 이 라이선스의 원문은 부록 B에 수록되어 있다.

권고 승인은 권고 A.8에 명시된 승인 절차를 따른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설명 및 라이선스 선언서에 관한 정보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설명 및 라이선스 선언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용할 수 있다.

TSB는 통상의 ITU-T 문서보관 시간 일정에 따라 접수된 모든 소프트웨어를 저장한다. A 유형의 기고서는 모든 회원에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나, B 유형의 비선택 기고서는 해당 ITU 직원으로만 한정되며 연구반과 협의하여 TSB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3.5.3 소프트웨어를 심사하는 회원

권고 승인에 앞서, 소스코드를 포함한 소프트웨어는 권고 승인을 고려하여 그 사용을 위한 회원들에게 평가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평가 기간 중 회원은 부기 B 라이선스에서 제시된 소프트웨어의 액세스 및 사용조건에 유의하여야 한다.

3.6 권고 출판 후 또는 출판 중 행위 및 의무

3.6.1 저작권자

소프트웨어 저작권 설명 및 라이선스 선언서 양식(부기 A 참조)에 서명하는 것으로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관련 권고가 승인되면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는 무료로 전세계적인 라이선스를 ITU에게 허여한다. 이로써 ITU는 직접 또는 재판매자를 통해 권고와 함께 적절한 저작권 통지문 그리고/또는 라이선스 약정서가 들어있는 소프트웨어를 복제·출판·보급 또는 판매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는 ITU로 하여금 표준화 목적으로 다른 표준개발기구(SDO)에 라이선스 보유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도록 허용할 것인지 명시해야 한다. 다만, SDO는 본래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설명 및 선언서 양식에서 소프트웨어 저작권자가 선택한 옵션에 따른 조건을 소프트웨어 수령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저작권 통지문을 소프트웨어에 부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3.6.2 권고 사용자

권고 사용자는 권고를 위하여 저작권 통지 그리고/또는 라이선스 약정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관한 상황에 유의하고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주 : ITU-T 권고 또는 전환된 SDO 표준을 통해서이든지, 소프트웨어 사용자는 권고 구현을 위하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라이선스를 획득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사용자와 소프트웨어 저작권자 간의 모든 협상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설명 및 라이선스 선언서 양식에서 선택한 옵션에 따라 이루어지며, ITU-T 범위 밖에서 수행된다.

3.6.3 ITU-T

3.6.3.1 소프트웨어에 따르는 저작권 통보/ 라이선스 계약

이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권고의 판매와 보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저작권 통지 및 특정 상황 하에서의 라이선스 약정이 부기 C에 규정된 바에 따라 함께 동봉된다 (예, zip 파일로).

3.6.3.2 SDO와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권고 제정을 합의

권고 A.6는 SDO가 ITU-T 권고안 또는 승인된 권고를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특히, 권고 A.6 2.2.1항은 SDO가 ITU-T 권고안 또는 승인된 권고를 전부 또는 일부를 ITU-T 권고에 대한 수정 또는 수정 없이 SDO 문서안의 전부 또는 일부로 수용하는 절차를 정의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허여를 받은 경우에는 SDO가 ITU-T 권고의 원문을 SDO의 해당 임의표준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ITU-T는 SDO에 소프트웨어 저작권자가 선택하는 옵션에 따라 필요한 저작권 통지/라이선스 약정서를 소프트웨어와 함께 제공하도록 한다.

주 : ITU-T 권고 또는 전환된 SDO 표준을 통해서이든지, 소프트웨어 사용자는 권고 구현을 위하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라이선스를 획득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사용자와 소프트웨어 저작권자 간의 모든 협상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설명 및 라이선스 선언서 양식에서 선택한 옵션에 따라 이루어지며, ITU-T 범위 밖에서 수행된다.

3.6.4 ITU-T 권고를 대체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허락 아래 소프트웨어 코드를 포함하는 ITU-T 권고를 수용한 SDO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존재를 인식하고, 필요한 저작권 통지문 그리고/또는 라이선스 약정 등과 함께 소프트웨어를 공급해야 한다.

———

부기 A

소프트웨어 저작권 설명서 및 라이선스 허여 선언서

(일반적으로 ITU-T 권고마다 작성)

제출처 : 국장
전기통신표준화국
국제전기통신연합

Place des Nations
CH-1211 Geneva 20, Switzerland
Fax: +41 22 730 5853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유자/ 조직단체:

법인명 _____

라이센스 신청을 위한 연락처:

성명 _____
부서 _____
주소 _____
_____
_____
전화 _____
팩스 _____
이메일 _____

ITU-T 권고:

번호 _____
제목 _____

소프트웨어 명칭 및 버전 (이하 "소프트웨어") _____

라이선스 선언서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는 위 ITU-T 권고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에 관한 저작권을 보유하거나 라이선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 (옵션 1.1, 1.2, 1.3, 1.4, 2 또는 3 중 하나만 선택)

☐ 1.1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는 자신의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포기하며, 따라서 누구든지 자신의 책임과 위험 부담 하에 아무런 제한 없이 그리고 아무런 조건 또는 로열티 등에 구애 받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어떠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라이선스 약정도 요구되지 않는다.

☐ 1.2 이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가이드라인 부기 D에 명시된 라이선스 조건에 동의한다. 따라서 권고 승인 당시 권고 구현에 필요한 양도 가능한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ITU에 양도하며, 이때 ITU는 위의 ITU-T 권고를 구현하기 위한 제한적인 목적을 위하여 소프트웨어를 복제·수정·사용 그리고/또는 보급하기 위한 전세계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무제한의 사용자에게 무료 라이선스를 허여한다.

☐ 1.3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는 위의 ITU-T 권고에 대하여 상호주의 입장에서, 위의 ITU-T 권고를 구현하기 위한 제한적인 목적을 위하여 소프트웨어를 복제·수정·사용 그리고/또는 보급할 수 있도록 전세계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무제한의 사용자에게 무료로 라이선스를 허여한다. 상술한 라이선스에 의하여 추가적 조건이 부과되지 않으며, 라이선스 조건은 부기 C 옵션 1.3에서 정한다. 사용자는 라이선스 획득을 목적으로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와 연락할 필요는 없다.

☐ 1.4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는 위의 ITU-T 권고에 대하여 상호주의 입장에서, 위의 ITU-T 권고를 구현하기 위한 제한적인 목적을 위하여 소프트웨어를 복제·수정·사용 그리고/또는 보급할 수 있도록 전세계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무제한의 사용자에게 무료로 라이선스를 허여한다. 부기 문서에서 요약된 바와 같이, 앞서 언급한 라이선스에 의해 추가적인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이 부여된다; 그리고 부기 C 옵션 1.4의 문구가 적용된다. 사용자는 라이선스를 획득을 목적으로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와 연락할 필요가 있다. 라이선스에 관한 협상은 관계 당사자들의 몫으로서 ITU-T 밖에서 수행된다.

☐ 2.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는 위의 ITU-T 권고에 대하여 상호주의 입장에서, 위의 ITU-T 권고를 구현하기 위한 제한적인 목적을 위하여 소프트웨어를 복제·수정·사용 그리고/또는 보급할 수 있도록 전세계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무제한의 사용자에게 라이선스를 허여한다. 부기 문서에서 요약된 바(로얄티 또는 요율 기준은 제외)와 같이, 앞서 언급한 라이선스에 의해 추가적인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이 부여된다; 라이선스에 관한 협상은 관계 당사자들의 몫으로서 ITU-T 밖에서 수행된다.

☐ 3.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는 위의 1.1, 1.2, 1.3, 1.4 또는 2의 규정에 따라 라이선스를 허여하기를 원치 않는다.

옵션 1.2, 1.3, 1.4 및 2의 경우 아래 사항이 적용 된다:

-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는 이 양식에 서명함으로써, 권고안의 평가 목적으로 소프트웨어 저작권 가이드라인의 부기 B에 명시된 라이선스 조건에 동의하며, TSB에 제공된 소프트웨어와 함께 이 라이선스를 첨부하는 데에 동의한다.
- 추가적으로 그리고 권고가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승인되는 경우,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는 여기에서 ITU에게 전세계적인 라이선스를 무료로 허여한다 :
  - ITU는 권고와 함께 적절한 저작권 통지문 그리고/또는 라이선스 약정을 포함하여 소프트웨어를 직접적으로 또는 재판매자를 통하여 복제·발행·보급 또는 판매할 수 있다.

☐ - 이 박스를 선택하면, ITU는 표준화 목적으로 기타 표준개발기구에게 라이선스 대상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이 때 SDO는 적절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통지를 소프트웨어와 함께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저작권자가 소프트웨어 수령자에게 본 양식에서 소프트웨어 저작권자가 선택한 옵션과 관련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서 명 _____

조직 _____

대리인 성명 _____

대리인 직위 _____

소재지, 일자 _____

부기 B

"ITU 권고 평가"를 위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약정

(권고안 승인에 앞서 적용)

라이선스 계약서

"[이름/주소/연락처 기입] (이하 "소유자")는 이 전자적 자료(이하 "소프트웨어"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도록 ITU-T 회원(이하 총칭하여 "사용자"라 한다)에게 무료로 비독점적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단, 사용자는 본 라이선스 약정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사용자(관할 하에 있는 모든 사람 포함)는 오로지 ITU-T 권고안 XYZ(관련 내용 기입)를 평가할 목적으로만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소프트웨어를 제3자에게 대여, 리스, 판매, 재면허 또는 기타 양도할 수 없으며, 권고안 승인(또는 거부)와 함께 평가 기간의 종료 후까지 사용자에게 연장할 수 있는 어떠한 권리도 수반하지 않는다.

본 약정에 따라 허여된 소프트웨어 또는 기타 정보는 어떠한 잠재적·현재적 책임 부담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유형의 보증도 없이 "그대로" 허여된다. 소유자와 그 보조기관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대표성이나 보증하지 않는다. 예컨대, 소유자와 그 보조기관은 특정 목적을 위한 상업성 또는 적합성을 주장하거나 소프트웨어 또는 기타 정보의 사용으로 제3자의 특허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제3자의 특허권이나 기타 지적재산권의 라이선스를 얻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은 사용자의 전적인 책임이다. 소유자와 그 보조기관은 라이선스 보유 소프트웨어나 기타 아래에 제공되는 정보 이용 때문에 또는 그러한 정보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용자나 다른 제3자에 의한 주장에 대해서는 책임 지지 않는다.

소유자나 사용자는 해당 당사자가 피해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이야기를 들었든 듣지 못했든 본 약정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어떠한 우연적·간접적·특별한·전형적이고 결과적인 손실이나 피해 또는 어떠한 종류의 수익, 적금 또는 수입의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규정은 유일한 구제조치가 실패하더라도 여전히 유효하다.

소프트웨어는 소유자의 단독 소유권이며 그러한 권리로 존재한다.

사용자는 소프트웨어 평가 목적으로 ITU-T 연구반에 제공된 결과를 제외하고, 소유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소프트웨어 평가 결과를 누설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사용자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고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사용자의 소프트웨어 사용은 본 라이선스 약정을 수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부기 C

저작권 통보/ 라이선스 계약

(승인된 권고에 포함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만 적용)

주: 본 부기에는 신고서에 언급된 각 옵션에 대한 저작권 통보/라이선스 약정 원문이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원문은 소프트웨어와 함께 제공되며 여기에서는 정보 차원에서 포함시켰다.

옵션 1.1: 저작권 통보:

"동봉한 전자적 자료(이하 "소프트웨어"라 한다)는 저작권 제한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소프트웨어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ITU는 본 권고의 실현이나 구현이 지적재산권의 이용을 수반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ITU는 ITU 회원에 의한 주장이든 본 권고 개발절차 외부의 자에 의한 주장이든, 주장된 지적재산권의 증거, 타당성, 적용가능성에 관해 아무런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 본 권고의 승인일로부터, ITU는 본 권고를 구현하는 데 요구될 수 있는 특허권을 통해서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의 통보를 받았다(또는 받지 못했다). 그러나 구현자는 이것이 최근의 정보를 나타내지 않을 수 있으므로, TSB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반드시 참조해야 한다.

책임의 한계 : 어떠한 경우에도 ITU는 동봉되는 소프트웨어의 사용이나 사용불능에서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피해(수익 손실, 영업 중단, 정보 손실, 기타 금전적인 손실 포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ITU는 상업성과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 보증(이것에 국한되지 않음)을 포함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모든 보증을 거부한다."

옵션 1.2: 라이선스 계약:

"ITU는 이로써 위의 ITU-T 권고를 구현하는 제한적인 목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복제·수정·사용·보급할 수 있도록 귀하에게 전세계적이고 비독점적인 무료 라이선스를 허여한다.

귀하는 여기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소프트웨어를 대여·리스·판매·재면허·양도 기타 이전할 수 없다. 이 제한에는 외부 네트워크에 설치하는 것과 같이 본 소프트웨어를 제3자의 처분에 맡기는 행위도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본 소프트웨어의 사용은 본 약정 조건을 귀하가 수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ITU는 본 권고의 실현이나 구현이 주장된 지적재산권의 이용을 수반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ITU는 ITU 회원에 의한 주장이든 본 권고와 관련이 없는 외부인에 의한 주장이든, 주장된 지적재산권의 증거, 타당성, 적용가능성에 관해 아무런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 본 권고의 승인일로부터 ITU는 본 권고를 구현하는 데 요구될 수 있는 특허권을 통해서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의 통보를 받았다(또는 받지 못했다). 그러나 구현자는 이것이 최근의 정보를 나타내지 않을 수 있으므로 TSB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반드시 참조해야 한다.

책임의 한계: 어떠한 경우에도 ITU는 동봉되는 소프트웨어의 사용이나 사용불능에서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피해(수익 손실, 영업 중단, 정보 손실, 기타 금전적인 손실 포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ITU는 상업성과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 보증(이것에 국한되지 않음)을 포함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모든 보증을 거부한다."

옵션 1.3: 라이선스 계약

"[성명/주소/연락처 기입] (이하 "소유자")는 동봉되는 전자적 자료(이하 "소프트웨어"라 한다)와 관련해서 저작권 또는 라이선스 허여권을 가지고 있다. 소유자는 이로써 관련 ITU-T 권고를 구현하는 제한적인 목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복제·수정·사용·보급할 수 있도록 귀하에게 범세계적이고 비독점적인 무료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귀하는 여기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소프트웨어를 대여·임대·판매·재면허·양도할 수 없다. 이 제한에는 외부 네트워크에 설치하는 것과 같은 본 소프트웨어를 제3자의 처분에 맡기는 행위도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본 소프트웨어의 사용은 본 약정 조건을 귀하가 수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ITU는 본 권고의 실현이나 구현이 지적재산권의 이용을 수반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ITU는 ITU 회원에 의한 주장이든 본 권고와 관련이 없는 외부인에 의한 주장이든 주장된 지적재산권의 증거, 타당성, 적용가능성에 관해 아무런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 본 권고의 승인일로부터 ITU는 본 권고를 구현하는 데 요구될 수 있는 특허권을 통해서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의 통보를 받았다(또는 받지 못했다). 그러나, 구현자는 이것이 최근의 정보를 나타내지 않을 수 있으므로 TSB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꼭 참조할 필요가 있다.

책임의 한계: 어떠한 경우에도 ITU는 동봉되는 소프트웨어의 사용이나 사용불능에서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피해(수익 손실, 영업 중단, 정보 손실, 기타 금전적인 손실 포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ITU는 상업성과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 보증(이것에 국한되지 않음)을 포함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모든 보증을 거부한다."

옵션 1.4: 저작권 통보

"[성명/주소/연락처 기입] (이하 "소유자")는 동봉되는 전자적 자료(이하 "소프트웨어"라 한다)와 관련해서 저작권 또는 라이선스 허여권을 가지고 있다. 소유자는 관련 ITU-T 권고를 구현하는 제한적인 목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복제·수정·사용·보급할 수 있도록 전세계적이고 비차별적이며 신청자 수에 관계없이 기타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을 포함할 수 있는 무료 라이선스를 허여하기로 합의했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전에 이러한 라이선스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위에 명시된 주소지의 소유자에게 연락한다.

ITU는 본 권고의 실현이나 구현이 주장된 지적재산권의 이용을 수반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ITU는 ITU 회원에 의한 주장이든 본 권고와 관련이 없는 외부인에 의한 주장이든 주장된 지적재산권의 증거, 타당성, 적용가능성에 관해 아무런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 본 권고의 승인일로부터 ITU는 본 권고를 구현하는 데 요구될 수 있고 특허권을 통해서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의 통보를 받았다(또는 받지 못했다). 그러나, 구현자는 이것이 최근의 정보를 나타내지 않을 수 있으므로 TSB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반드시 참조해야 한다.

책임의 한계: 어떠한 경우에도 ITU는 동봉되는 소프트웨어의 사용이나 사용불능에서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피해(수익 손실, 영업 중단, 정보 손실, 기타 금전적인 손실 포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ITU는 상업성과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 보증(이것에 국한되지 않음)을 포함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모든 보증을 거부한다."

옵션 2: 저작권 통보:

"[성명/주소/연락처 기입] (이하 "소유자")는 동봉되는 전자적 자료(이하 "소프트웨어"라 한다)와 관련해서 저작권을 가지거나 라이선스 권한을 가지고 있다. 소유자는 관련 ITU-T 권고를 구현하는 제한적인 목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복제·수정·사용·보급할 수 있도록 전세계적이고 비차별적이며 신청자 수에 관계없이 기타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라이선스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위에 명시된 주소지의 소유자에게 접촉한다.

ITU는 본 권고의 실현이나 구현이 지적재산권의 이용을 수반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ITU는 ITU 회원에 의한 주장이든 본 권고와 관련이 없는 외부인에 의한 주장이든 주장된 지적재산권의 증거, 타당성, 적용가능성에 관해 아무런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 본 권고의 승인일로부터 ITU는 본 권고를 구현하는 데 요구될 수 있는 특허권을 통해서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의 통보를 받았다(또는 받지 못했다). 그러나, 구현자는 이것이 최근의 정보를 나타내지 않을 수 있으므로 TSB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반드시 참조해야 한다.

책임의 한계: 어떠한 경우에도 ITU는 동봉되는 소프트웨어의 사용이나 사용불능에서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피해(수익 손실, 영업 중단, 정보 손실, 기타 금전적인 손실 포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ITU는 상업성과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 보증(이것에 국한되지 않음)을 포함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모든 보증을 거부한다."

부기 D

옵션 1.2에 대한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와 ITU 간의 라이선스 조건

주의: 본 부기는 옵션 1.2에 대해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와 ITU 간의 라이선스 조건을 정의한다. 이것은 정보용으로 여기에 포함시켰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는 ITU-T 권고 xyz에 들어있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설명 및 라이선스 선언서에 언급된 전자적 자료(이하 "소프트웨어"라 한다)에 관해서 저작권자가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에 대한 타당하고 강제적 권리를 보유하거나 소프트웨어 저작권 설명 및 라이선스 선언서의 옵션 1.2에 따라 저작권에 라이선스를 허여할 권리를 보유하며, 이러한 권리를 통해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한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는 이로써 ITU에게 앞에서 말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설명 및 라이선스 선언서의 옵션 1.2에 언급된 바와 같이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제한적인 목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복제·보급·수정할 수 있도록 ITU에게 로열티 없는 전세계적이고 비독점적인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ITU는 신청자나 제3자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용 침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는 이로써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청구와 관련해서 이에 의해 유발되는 손실, 비용, 피해, 경비에 대해서 ITU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호하기로 합의한다."

ITU-T 권고에 상표권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1. 개요

1.1 목적

지적재산권(IPR)에는 특허, 저작권, 상표권 및 영업비밀 등이 포함된다.[1] 본 문서의 취지는 ITU-T 권고안에 상표, 서비스 마크 및 인증마크의 사용을 고려하고 있는 ITU-T 연구반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한 가지 이상의 마크 사용을 고려할 경우 검토해야 할 문제에 관한 몇 가지 일반적인 정보와 연구반이 이러한 마크를 참조키로 결정할 경우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한 일부 가이드라인도 포함되어 있다.

1.2 배경 - 지적재산권 형태로서의 상표, 서비스 마크 및 인증마크

이러한 유형의 마크는 특허와 저작권과는 매우 다른 종류의 지적재산이다. 일반적으로 "상표"는 상표 소유자의 제품과 경쟁사의 것을 구별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 명칭, 기호 또는 이들의 조합이며, 대개 이러한 상품의 원산지를 나타내는 구실을 한다.[2] "서비스 마크"는 사실상 상표와 동일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서비스의 원산지를 밝히고 서비스 제공업자의 서비스와 경쟁사의 것을 구별하는 데 사용된다는 점이다. "인증마크"는 마크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나 법인에 의해 사용되는 마크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람이나 법인은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가 이러한 마크가 나타내는 필요한 기준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이러한 마크를 사용하려고 한다. 주목해야 할 것은 상표를 포함해서 마크에 관한 법규나 규정이 나라마다 다르다는 점이다.[3]

---

1) ITU-T 권고에 포함된 저작권 보유 자료를 다루는 문제의 경우 ITU-T 권고 A.1, 3.1.5항과 소프트웨어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참조한다. ITU-T 권고에 포함된 특허 보유 자료를 다루는 문제의 경우 ITU-T 특허정책과 이와 관련된 ITU-T 특허정책 구현 가이드라인을 참조한다.

2) 부기 A에서는 ITU가 3개 영역의 명칭과 약어뿐만 아니라 이 기구의 명칭, 약어, 기장, 문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3) WIPO는 이렇게 설명했다.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은 상표를 등록하고 보호한다. 각 국가나 지역 관청은 제3자에 의한 조사, 검색 및 잠재적 대항을 용이하게 하는 모든 등록과 갱신에

ITU-T 권고와 관련해서 마크는 흔히 마크를 확인하거나 마크 소유자의 사전 허락 없이도 합법적으로 참조할 수 있다. 적절하게 참조할 경우, 마크는 ITU 또는 권고를 구현하려고 하는 자에게 이 권고를 구현하기 위해서 마크 소유자로부터 라이센스를 획득하도록 하는 권고의 필수적 지적재산권은 아니다. 하지만 마크의 일정한 비참조적 이용은 마크 소유자로부터 허락이나 라이센스를 요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표 라이선스는 당사자 A의 마크가 후원, 인가, 인증, 승인, 또는 기타 당사자 B의 제품이나 서비스와의 관련성을 나타낼 때 요구된다. 예를 들면, 당사자 B의 제품이 당사자 A의 적합성 로고를 나타내거나 또는 당사자 B의 제품명에 당사자 A의 상표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라이선스가 요구될 수 있다.

하지만 당사자 B가 당사자 A의 기술을 단지 설명식으로 언급하기 위해서 당사자 A(당사자 B의 것이 아님)의 마크를 사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마크의 이러한 지시적 사용과 관련해서는 상표 라이선스가 요구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당사자 B가 당사자 A의 Widget® 소프트웨어에 적합함을 광고하는 경우 당사자 A의 Widget Compatible Logo®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라이선스가 필요하지 않다.[4)]

어떤 경우에도 마크 사용에 있어서 혼란은 피해야 한다. 문서에서 의도한 청중이 혼란을 느끼고 마크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 또는 기술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을 경우 이런 식의 마크 사용은 재고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기존 마크와 유사한 이름이나 약어를 사용할 때에도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권고에 마크 사용과 관련된 주된 관심은 이 권고가 경쟁사에 한 가지 특정 소유 제

관한 완전한 신청 정보를 담고 있는 상표등록 원부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등록부의 영향은 관련 국가에만 한정된다. 각 국가나 지역 관청에 독립적으로 등록해야 할 필요성을 피하기 위해서 WIPO는 국제마크등록 제도를 운영한다. 이 제도는 "국제상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과 "마드리드 의정서"라는 두 조약에 의해 관리된다. 상표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할 경우 http://www.wipo.int/about-ip/en/about_trademarks.html의 내용을 참조한다.

4) "®"이나 "™"과 같은 마크 표시는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 결국 TSB가 표시 기호를 사용할 것인지와 사용한다면 어떤 기호가 가장 적절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다.

품이나 서비스를 양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가 하는 점이다.

2. ITU-T 권고에 마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법

일반적으로 ITU-T 권고는 경쟁관계에 있고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할 수 있는 특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권고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 또는 회사/조직단체를 승인한다는 인상은 피해야 한다. 명시적·사실상 보증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특정 회사/조직단체의 고유명사, 상표, 서비스마크, 인증마크, 제품 또는 서비스는 ITU-T 권고를 읽는 자에게 이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상을 줄 경우 ITU-T 권고의 본문이나 부기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문서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실제 마크 사용시 라이선스가 필요한 경우, 권고에 마크를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연구반은 ITU-T 권고에 마크를 포함시킬 때 매우 조심해야 한다. 연구반이 특정 마크 사용이 적절한지 불확실할 경우 TSB 국장과 상의해야 한다. ITU-T 권고에 마크를 사용하는 모든 행위는 TSB의 승인을 요한다.

3. 일반 접근의 예외

3.1 마크의 비보증 사용

관련 마크에 속하는 특정 기술이나 서비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ITU-T 권고에 상표나 서비스 마크 또는 인증마크를 포함시키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적절하게만 표현된다면 마크의 이러한 서술적인 사용은 마크와 관련된 권리 침해를 피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황은 문제의 마크가 표준 또는 표준화된 기술을 약어 형식으로 언급할 때 발생하며 권고에 마크를 포함시킨다고 해서 특정 소유주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양도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는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서술하기란 불가능하므로 아래 몇 가지 예를 통해서 적절한 마크 사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1. 마크 또는 적절한 명칭은 허가된 단독 소스로 널리 인식되는 특정 단체를 지칭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권고는 ITU-T에 의해 할당된 특정 네트워크 식별자와 관련된 브랜드 서비스를 언급할 수 있다.
2. 마크는 언급된 표준의 지칭에 포함된다. 예를 들면, 다수의 표준화기구는 대내외적으로 표방하는 표준 지칭의 일환으로 기구의 이름을 사용한다. 그 결과, ITU-T 권고에는 "ETSI xxx", "ISO/IEC xxx", "TIA xxx"에 대한 참조가 포함될 수 있다.
3. 마크는 특정 표준화된 접근법을 가리키는 잘 알려진 속기 언급이다. 예를 들면 WiFi 기술, cdma2000 기술, Bluetooth 기술, GSM 기술, UMTS 기술 등을 언급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연구반이 ITU-T 권고내에 앞서 언급한 목적으로 마크를 언급하고자 할 경우, 이것은 마크와 관련된 권리 침해를 피하기 위해 아래 조항 3.2에 명시된 적절한 사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서술적 이용이어야 한다.

3.2 ITU 외부 소유 마크에 대한 적절한 사용

ITU-T 권고에서 ITU 외부 소유 한 가지 이상의 마크를 언급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연구반은 수용가능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정확하고 사실에 입각한 진술의 일환으로 "적절한 사용" 표시를 하거나, 특정 객체(권고내 원문에 언급된 표준의 지칭물)를 확인(보증이 아니라)하기 위한 수단으로 상표를 표시할 수 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표준기구나 다른 마크 소유자의 명시적 허락이나 관련 마크의 명시적 식별 없이도 가능하다. 이러한 유형의 사용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원산지에 관해서 고객을 속이는 수단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상표에 "적절한 사용" 표시가 고려되기 위해서는- 연구반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크를 이용하는 식으로 마크를 이용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것으로서 어떤 것의 근원을 설명하는 수단으로 그리고 선의로 이러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서 마크 소유자의 선의를 훼손할 수 있다.

ITU-T 권고 원문에 마크의 "적절한 사용" 표시를 할 때 연구반은 아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a. 마크는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사물을 가리키는 적절한 형용사이다. 따라서 마크는 속명이나 명사가 뒤따르는 고유형용사로 사용되어야 한다. 마크를 동사나 명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이 프로토콜은 WiMax와 WiFi로 전송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고 "이 프로토콜은 WiMax 인프라와 WiFi 인프라상의 전송에 사용될 수 있다"는 표현이 올바른 사용이다.

b. 단일 표현에 마크를 결합하지 않도록 한다. 각각을 독립적으로 언급해야 옳다. 예를 들면, "이 프로토콜은 WiMax/WiFi 인프라상으로 전송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표현은 옳지 않고 "이 프로토콜은 WiMax 인프라와 WiFi 인프라상으로 전송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표현이 옳다.

c. 마크를 단축형이나 약어 형식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예를 들면, "이 명세서는 AP 서비스 라우터의 사용을 지원한다"는 표현은 옳지 않고 "이 명세서는 액세스 포인트 서비스 라우터의 사용을 지원한다"는 표현이 옳다.

4. 연구반의 작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마크

ITU-T 권고의 개발 과정에서, 특정 연구반이 권고안의 명칭, 마크, 소유권 설명 또는 권고를 구현하는 당사자들에 의해 사용권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믿는 표준화된 접근법을 고안할 경우 그 연구반은 TSB 국장에게 그렇게 하도록 조언한다.

ITU-T는 ITU-T 권고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접근법을 확인하는 용어에서 어떤 권리도 명시적으로 포기하지 않는다. ITU-T 권고 또는 권고에 따른 제품의 인증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마크에 대한 ITU의 이해관계는 보호되어야 한다.

부기 A

ITU명칭과 로고의 보호

ITU 명칭과 로고는 통상적인 의미의 상표가 아니다. 이것은 현재 169개국이 계약당사자인 파리조약에 의해 만들어진 특정 지적재산 제도를 통해서 보호 받는다. 더욱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도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에 의존해서 파리조약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파리조약은 제6조에 권한이 없는 제3자에 의한 상표의 등록이나 사용에 국가나 국제기구의 문장, 기 및 기타 공식서명의 보호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현재 ITU의 기장, 명칭, 약어, 문장/로고 및 3개 부문(ITU-R/T/D)의 명칭이나 약어(영어, 불어, 스페인어)는 파리조약에 의해 부여되는 보호를 받도록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전해졌다.

이 보호는 제3자가 상업용으로 공업소유권으로서의 ITU의 기장, 명칭, 약어, 문장/로고, 특히 상표를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는 사항을 포함하며 3개 부문의 이름이나 약어뿐만 아니라 명칭, 약어, 기장, 문장/로고를 보호할 권리를 ITU에게 부여한다.[5]

파리 조약에 의한 보호 뿐만 아니라, 파리 조약 제6조를 실행하는 국내법은 상표권 이외의 지적재산권 등록으로 그 보호의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침해에 대한 법적구제는 행정과 민사절차에서부터 형사상의 제재에까지 이른다. 구제책으로는 상표 취소, 금지명령, 금전상 손해배상 등이 있다.

파리조약은 ITU가 ITU의 로고와 두문자의를 사용할 권한을 제3자에게 부여하고, 그 조건을 선택할 권한을 금지하지 않는다.

---

5) 파리조약 제 6조가 부여하는 보호제도에 관한 보다 많은 정보는 WIPO 홈페이지 http://www.wipo.int/article6ter/en/에서 입수할 수 있다.